

## ■ 특별공급(생애최초) 당첨자 자격검증 제출 서류 (계약체결 전 제출)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생애최초 특별공급	○		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	본인 및 성년인 세대원	·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/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·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필수(발급처: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-1000) · *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필수(발급처: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-1000)
	○		소득증빙서류	본인 및 성년인 세대원	·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[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] (단, 배우자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증빙서류)
	○		소득세납부 입증서류	본인	·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
		○	주민등록표초본 (전체포함)	직계존속	·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,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(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'전체 포함'으로 발급)
		○	혼인관계증명서 (상세)	직계비속	·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이년 분이 동일 등본상 만 18세 이상의 자녀를 '미혼인 자녀'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
		○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배우자	·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	○	비사업자확인각서	본인 및 해당자	·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(근로자 및 자영업자 포함) · 견본주택 비치
		○	부동산소유현황	본인 및 세대원	· 소득기준은 초과하나,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(과)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(발급기관)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 등기열람/발급) 부동산) 부동산 소유 현황(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) · 발급 시 (주민)등록번호 공개에 체크
		○	부동산 건물 및 토지 등기사항부등명세서	본인 및 세대원	·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천제로 당첨된 경우 · 부동산 소유현황 조회 결과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 본인 및 세대원이 소유한 부동산이 확인 될 경우 제출
		○	부동산 가격 증명 서류	본인 및 세대원	·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천제로 당첨된 경우 · 부동산 소유현황 조회 결과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 본인 및 세대원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 제출 · * 부동산 가격조회 참고자료 - 토지: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- 개별공시지가 조회 후 해당 토지면적을 곱하여 산출 - 공동주택/단독주택: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- 공동주택가격 열람 / 단독주택가격 열람 - 기타 건축물: 위택스 - 지방세정보 - 시가표준액 조회
	○	재산세 납부내역서	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	·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천제로 당첨된 경우 · 미등기 부동산으로 부동산 소유현황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	
공통 서류	○		특별공급신청서, 특별공급 확인서,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, 서약서	-	·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(인터넷 청약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)
	○		신분증	본인	·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
	○		주민등록표등본(전체포함)	본인	· 주민등록번호(세대원포함), 주소 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전체포함)	본인	·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 받고자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·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·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본인	·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-입주자모집공고일로,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"Y"로 설정하여 발급 ·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
		○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세대원	·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애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-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은 세대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
		○	주민등록표등본(전체포함)	배우자	·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(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배람)
		○	복무확인서	본인	·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(수도권)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-군복무기간(10년 이상)을 명시
	○	해외체류(단신부임) 관련 입증서류	본인	·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, 제4조제7항에 의거 당첨자(청약신청자)가 생애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(본인만)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· 생업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· [※이래 참고 '해외근무자(단신부임) 입증서류' 참조]	
해외 근무자 (단신부임)	○		해외체류 증빙서류	본인	· 국내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- 파견 및 출장명령서 ·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- 현지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서류,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· 근로자가 아닌 경우(※ 아래사항 반드시 제출)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· ※ 유학, 연수, 관광,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,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
		○	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	본인 및 세대원	·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- 비자발급내역,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,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다는 사실(계속하여 90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)
		○	주민등록표등본	직계존속	·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-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 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, 세대주 등록 및 변경일자 등 모두 포함하여 "상세" 발급. · *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(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)
		○	주민등록표초본	직계존속	·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-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"상세" 발급. -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(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)
		○	출입국사실증명원	배우자 및 직계존비속	· 배우자가 생애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(배우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)
부적격 당첨 통보를 받은 자	○		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	해당 주택	· 등기사항전부증명서, 건축물대장등본, 무허가건물확인서,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등 ·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	○		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	해당 주택	·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
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당첨자	· 본인발급용 (용도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) (단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)
	○		위임장	당첨자	·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,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
	○		신분증, 인장	대리인	· 당첨자 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함(계좌-비속 포함) ·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

※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함.(※서류미비 시 접수 불가)  
 ※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된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.  
 ※ 주민등록표등·초본 발급 시 기재(포함)되어야 할 내용: "주민등록번호",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 및 "주소변동이력"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"주민등록번호",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, "주소변동이력"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.  
 -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(포함)되어야 할 내용: 세대구성 사유,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, 현 세대원의 전입일/변동일/변동사유,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 
 -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(포함)되어야 할 내용: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, 과거의 주소변동사항(전체 포함),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
 ※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.

### ■ 특별공급(생애최초) 당첨자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 서류 (계약체결 전 제출)

해당여부	서류구분	확인자격	증빙제출서류	발급처
생애최초 특별공급	자격입증 서류	근로자	①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-세무서 -해당직장 -건강보험공단
		자영업자	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
	소득세납부 입증서류	근로자,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	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(납부내역증명 포함) (과거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)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-세무서 -해당직장
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(근로자, 자영업자,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)	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(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) 및 납부내역증명서(종합소득세 납부자) ② 납세사실증명(종합소득금액 증명 제출자에 한함)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직인날인)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(직인날인) ④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(원천징수영수증)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 증명			

※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 전원의 합산 월평균 소득을 입증하여야 함.

### ■ 특별공급(생애최초) 당첨자 소득 증빙 제출 서류 (계약체결 전 제출)

해당자격	소득입증 제출자료	발급처	
일반근로자	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원본: 직인날인)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(원본) ※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: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(‘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’으로 발급) ※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② 재직증명서(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 명시하여 발급)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	① 해당직장/세무서 ② 해당 직장	
근로자	금년도 신규취업자 / 금년도 전직자	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(직인날인)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※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, 동일 호봉인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 소득을 추정(또는 총 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및 월별 급여명세표(직인날인))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	①, ② 해당 직장
	전년도 전직자	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원본: 직인날인) ②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 ※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“추(현) 총 급여 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	①, ② 해당 직장
	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(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)	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(직인날인) 또는 월별급여명세표(근로소득지급조서) ※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②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	①, ② 해당 직장
자영업자	일반과세자 / 간이과세자 / 면세사업자	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(원본)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	①, ② 세무서
	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	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(원본) ②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)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(부분) 단,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미도래로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,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분)인정되며, 국민연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가입한 경우에만 인정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	①,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또는 세무서 ③ 세무서
	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	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)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(부분)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	① 국민연금관리공단 ② 세무서
	법인사업자	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(원본) ②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 사본	① 세무서 ② 세무서/등기소
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	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(직인날인)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(원본) ※ 소득신고 미도래로 인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되지 않는 경우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(원본) ②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(직인날인) ③ “위촉증명서 및 해촉증명서” 또는 “재직증명서” (직인날인)	① 해당직장/세무서 ②, ③ 해당 직장	
국민기초생활수급자	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	① 행정복지센터	
비규정직 근로자 / 일용직 근로자	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※ 근로계약서, 월별급여명세표 및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)	① 해당 직장 ② 국민연금관리공단	
무직자	① 비사업자 확인각서(견본주택에 비치) ※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에 소득(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)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② 소득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(신고 소득사실 없음)	① 견본주택 비치 ② 세무서 또는 홈택스	
기타(근로자 총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 한함)	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결정통지서(출산휴가기간동안 지급된 급여내역)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(재직증명서 또는 별첨 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)	① 거주지 관할 구역 고용센터 등 ② 해당직장	

※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부 공개 “상세”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※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이라도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(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)이 있는 경우 해당소득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※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 중에 휴직했던 분은 휴직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※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원본을 제출(직인날인)해야 하며, 사본 및 FAX 수신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.